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한명희 의원 외 10명 발의】

의안번호 1492

I. 구성결의안 개요

1. 제안경과

- 가. 발의자 : 한명희 의원 외 10명
- 나. 발의일 : 2016. 11. 2.
- 다. 회부일 : 2016. 11. 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그동안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어 왔으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성별격차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36개국 중 111위(2013년 기준)로 성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여성 노동참여율, 임금격차, 임원 비율 등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유리 천장 지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 가운데 꼴찌(2013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4년 연속 꼴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 2012년 이후 서울시 여성정책은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제정 및 성평등위원회의 운영, 성주류화 제도 추진 등 성평등 정책 기반을 확대·조성해 왔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여성이 처한 사회 저변의 환경과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여성일자리 분야뿐만 아니라 안전 분야와 건강, 주거, 빈곤 등의 분야에서도 여성이 특별히 더 취약한 상황임.
- 따라서, 서울시가 실질적 성평등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평등에 대한 서울시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 문화 확산과 구조화 된 성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강화 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여성정책(성평등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성평등 구현을 위한 각종의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참고 사항

-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

-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¹⁾은 서울시 성평등 정책의 기반 조성·확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 처한 사회 저변의 환경과 현실은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해, 서울시 여성정책이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 성에 기인하는 불평등,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등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특히나 OECD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성평등 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침체와 잠재성장률을 잠식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OECD 29개 회원국 중 ‘여성이 출세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로 한국은 매년 발표되고 있는 유리천장(glass-ceiling)²⁾ 지수에서 3년 연속 최하위권을 머물고 있는 실정임.

1)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됨.

2) 1986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일반화된 유리천장이란 용어는 여성의 관리직진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으로, ‘능력이나 업적에 관계없이 여성이나 소수민족이 관리직에 오르는 것을 막고 있는 보이지 않은 인위적인 장벽(invisible artificial barriers)’을 말함.

- OECD 평균 남녀소득격차는 15.5%인 반면, 한국은 3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 이사회 내 임원 비율은 2.1%로 OECD 평균 18.5%에 못미쳐 우리사회의 성 격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³⁾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6년도 세계 성격차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는 전체 144개국 중 116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러한 사회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실행력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서울시는 2012년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교육 실시, 서울시 및 24개 자치구 젠더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평등기금을 통한 민간주도의 성주류화 사업추진을 위해 44개 단체 6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16년기준) 있음.
- 또한,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과 여성 안전과 건강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 안심행복마을 운영, 여성폭력피해자 주거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성·건강관리 추진 등 여성안전과 사각지대 없는 여성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서울시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의 범위는 복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 생활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 공무원 조직과 성인지 예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하지만, 여성의 권익향상 및 경제활동 등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들은 각 부서별 개별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상호 연계성과 협조 상태가 부족한 바,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이에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 및 권익향상을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취지로 판단됨.
- 또한 여성의 삶의 지위 향상을 위한 업무가 특정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복지, 권익보호, 일자리, 안전 등 여러 분야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3) Glass-Ceiling Index, The Economist, 2016. 3. 3.

4)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인 의견 조회결과,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였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고자료 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33명 이내로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